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50

발의연월일: 2024. 11. 5.

발 의 자: 박성준 • 이기헌 • 황정아

진선미ㆍ허 영ㆍ정성호

강유정 · 천준호 · 모경종

한민수 · 김성회 · 추미애

정진욱 • 윤종군 • 박희승

이훈기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구성을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 임위원 1명 포함),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등비상임위원과 다른 책무가 부여되므로 특별히 인권의식 소양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임위원과 동일하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명되고 있어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도록 함으로써 상임위원의 인권의식 및 도덕성 검증을 통해 위원회

의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 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49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 호 제52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한국은행 총재"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한국은 행 총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 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위원・국무위원・방송 통신위원회 위원장 · 국가정보 원장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 권위원회 위원장 ·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 국세청장 • 검찰 총장 · 경찰청장 · 합동참모의장 · 한국은행 총재·특별감찰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한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이하 국은행 총재-----"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 다)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 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 · 대통령당 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 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

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